울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1144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정희장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회사(이하 '피고측 회사'라 한다)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31.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피고측 회사에 확정일자 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양도계약취소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2018. 2. 9.부터 2021. 4. 30.까지 C 운영의 'D'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총 338,413,45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는 무자력 상태에서 2022. 3. 31.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피고측 회사에 그에 따른 양도계약 취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 4,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를 거래처로 하여 2018. 2.경부터 2021. 4.경까지 유류를 공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C에 대하여 위 유류공급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1. 29. C를 상대로 원고 주장의 위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522호), 2023. 4. 12. 해당 소송에서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23. 4.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별지]

목 록

1. 주식 발행회사
   상호 : 주식회사 [ ]
   본점 소재지 : 울산 남구 [ ]
   대표자 : 사내이사 [ ]

2. 보통주 5,000주(1주의 금액 10,000 원) -끝-